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제안연월일 : 2026. 3. .

제 안 자 : 행정안전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명	대표발의	발의일자	심 사 경 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2207389)	2025.01.09.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25.07.01.)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5.07.08.) 상정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5.08.26.) 상정·축조심사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5.11.20.) 상정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6.03.11.) 상정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6.03.16.) 상정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6.03.17.) 상정 제4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6.03.24.)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위성곤의원 (2211840)	2025.07.30.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5.08.26.) 상정·축조심사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5.11.20.) 상정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6.03.11.) 상정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6.03.16.) 상정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6.03.17.) 상정 제4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6.03.24.)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의안명	대표발의	발의일자	심 사 경 과
	위성곤의원 (2213814)	2025.10.30.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5.11.20.) 상정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6.03.11.) 상정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6.03.16.) 상정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6.03.17.) 상정 제4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6.03.24.)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김한규의원 (2216064)	2026.01.15.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6.03.10.)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제4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6.03.24.)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김한규의원 (2217410)	2026.03.12.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6.03.16.) 상정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6.03.17.) 상정 제4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6.03.24.)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03.24.)는 이상 5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2026.03.26.)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5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위원 정수 확대 및 실무지원단 설치로 지원 체계를 정비하고,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지 절차를 신설하며,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선 이용 시 「출입국관리법」 제73조·제73조의2 및 제75조를 준용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에 관하여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률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30명”을 “3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25명”을 “30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를 “이 법에서”로, “지원위원회와”를 “지원위원회 및”으로, “구성 및”을 “구성과 운영, 실무지원단의 설치와”로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다.

제18조의2를 삭제한다.

제144조제1항제7호 중 “해제에”를 “해제 및 해지에”로 한다.

제16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3조의2(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지)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투자진흥지구에 대하여는 투자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장래에 향하여

해지할 수 있다.

1. 투자자의 투자가 전부 이행된 경우

2. 투자진흥지구 지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②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지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20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외국인이 제주에서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73조·제73조의2 및 제75조를 준용할 수 있다.

제24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라목, 같은 호 마목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에 두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은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4조, 제16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0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244조의 개정규정은 202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① (생 략)	제17조(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35명----------.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된다.	⑤ ----------30명----------.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이 법에서----------지원위원회 및----------구성과 운영, 실무지원단의 설치와----------.
제18조의2(사무기구의 설치) ①	<삭 제>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위원회에 필요한 사무기구를 둔다. ② 사무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4조(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회) ① 종합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에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회(이하 “종합계획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 6. (생 략) 7.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8. (생 략) ② ~ ⑤ (생 략) <신 설>	제144조(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회) ① ----------. 1. ~ 6. (현행과 같음) 7. ----------해제 및 해지에---------- 8.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63조의2(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지)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투자진흥지구에 대하여는 투자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종합계획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장래에 향하여 해지할 수 있다.

	1. 투자자의 투자가 전부 이행된 경우 2. 투자진흥지구 지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②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지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200조(운수업자 등의 의무) ① · ② (생 략) <신 설>	제200조(운수업자 등의 의무)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외국인이 제주에서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73조·제73조의2 및 제75조를 준용할 수 있다.
제244조(「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 ① · ② (생 략) <신 설>	제244조(「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 제3호라목, 같은 호 마목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에 두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은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